

해 외출장 결과보고

1. 출장개요

- 가. 출장건명 : 일본의 과채류 수급현황 파악
 나. 출장목적 : 일본 과채류 주산지의 시장 대응 및 소비실태 파악
 다. 출 장 자 : 농업관측정보센터 부연구위원 정은미
 농업관측정보센터 초청연구원 김수림
 농업관측정보센터 위촉연구원 윤선희
 라. 출장지역 : 일본 동경, 이바라키현
 마. 출장기간 : 2007. 11. 13(화) ~ 11. 16(금) (3박4일)

2. 출장일정 및 주요 면담자

일자	이동	방문기관	일정 및 면담
11월 13일 (화)	김포→하네다	소비지 대형마트	• 동경 시내 대형소매점 방문 (이토요카토, 이온)
11월 14일 (수)	동경→츠크바	중앙농업종합연구센터	• 일본 과채산업의 현황과 전망 • 면담자 : 경영계획부 연구원 平古 信太郎
	츠크바 →미토시	전농이바라키 원예부	• 현 과채류 생산 및 유통조사 • 면담자 : VFS과 과장 野崎
11월 15일 (목)	미토시 인근 지역	VFS(Vegetable Fruit Station) 유통시설 야사토 농협	• VFS 유통시스템 견학 • 전농이바라키 직판장 방문 • 야사토 농협 대외협력과장 柴山
	미토시→동경	대도시 지자체 판매장	• 이바라키현 안테나숍 방문
11월 16일 (금)	하네다→서울	오타도매시장	• 한국산 거래 동향조사 • 귀국

3. 주요 시사점

○ 일본 도매시장 및 유통환경의 변화

- 광역수송망과 소량택배운송네트워크의 확대, 저온유통기술 진보 등에 따라 신선 식료품의 공급범위가 넓어지고 그 유통채널은 시장 유통 뿐 아니라 생산자로부터 직접구매와 인터넷거래 등 다원화되고 있으며 시장의 유통을 확대하고 있음.
- 소매업계의 변화 양상은 신선식료품 관계의 일반소매점이 감소하고, 양판점은 종합슈퍼마켓이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식품전문슈퍼마켓으로 소비자의 구입처가 이동하고 있으며 외식산업에 있어서 신선식료품의 매입은 도매시장으로부터의 조달이 증가하고 있음.
- 수도권 인구는 안정된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신선식료품의 수요량도 지금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됨.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에 따라 도시락 등 중식, 외식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의 식품 안전·안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유통의 각 단계에 대해 식품의 안전·안심의 확보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

○ 일본 채소수급안정제도

- 일본은 1966년 이후 약 40년에 걸쳐 정부 주도하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채소가격안정제도를 정착시킴. 채소류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 수급기반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성을 비롯하여 농축산업진흥기구, 전농본부, 산지농협, 생산농가 등으로 연결되는 집행체계가 매우 정교하게 구축됨.
- 채소가격안정제도 집행의 요체인 기금조성에 중앙정부 외에도 지자체와 생산농가의 참여율이 높은 점이 돋보임.
- 한국은 일본에 비해 집행기구의 인적·물적자원이 부족하며, 지자체와 생산농가의 참여정도가 낮아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접목시키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내년부터 폐지 예정인 최저보장가격에 의한 '산지폐기제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유지기로 결정('07.4월 초)된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4. 주요 내용

1) 전농이바라키 VFS(Vegetable Fruit Station)

- 일본의 농산물 유통환경은 시장의 유통이 확산되어 수직적 거래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이런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VFS(Vegetable Fruit Station)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농협 유통사업의 혁신을 위해 최근 새롭게 도입된 농협의 중앙조직적인 전농 현 본부 중심의 새로운 산지유통주체임.
 - VFS는 전통적 농협 공동판매사업이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확대라는 시장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부회의 조직이 전업적 대응을 흡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것임.
- 이바라키현 전농본부의 VFS는 1995년에 결성되었으며 2000년 39억엔이 사업실적이 2007년 1,600억엔으로 급성장하고 있음.
 - 채소 사업실적 700억엔(도매시장 600억엔, 직거래 100억엔).
 - VFS의 사업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이 중 70%가 대형소매점등 시장 외 유통방식이고, 30%는 전통적 출하경로인 도매시장을 활용하고 있음. 출하경로에 따라 외식산업과 계약판매사업, 대형수퍼와의 직거래사업, 소포장 판매, 그리고 생활협동조합과 거래하는 사업으로 구분함.
- 농가와 거래는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출하농가와 계약재배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계약거래는 계약서가 아니라 각서방식으로 수량·가격·납기를 정하고 있음.
- VFS와 JA(지역농협) 간에는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VFS는 농가에 대해 수수료를 3.5~5% 정도 수취하고 이중 지역농협에 수수료로 1.5~2.0%를 지급하고 있음.
 - 판매가격은 농가 계약가격, Package비용 및 시설의 이용요금으로 20%를 제하고 물류비용 5%, 손실을 5%, 수수료 5%를 구성함.
- 농산물 소비시장이 변함에 따라 지역농협의 공판사업을 VFS와 통합하는 것으로 조직변화가 시도되고 있음.
 - 시장의 유통의 직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JA의 판매사업이 VFS로 통합되는 등 조직혁신을 추구하고 있음.

그림 1. 이바리키현 VFS



그림 2. 전농이바라키 직판장



2) 동경 오다(大田) 도매시장

○ 개요

- 면적 : 총면적(401,925m²), 청과·수산물부(346,321m²), 화훼부(55,604m²)
- 업무개시 연도 : 청과·수산물부(1989년), 화훼부(1990년)

○ 청과부 취급량 및 금액

	채소류	과일류	절임류(漬物)	계란	기타	합계	1일 취급량
중량(톤)	616,255	248,978	4,098	5,409	9,502	884,242	3,239
금액(백만엔)	135,301	85,911	1,800	1,208	1,895	226,115	828

자료: 오다시장 개요, 동경도중앙도매시장, 2005.

○ 물량 추이

- 동경도 관내 11개 도매시장 중에서 오다 도매시장의 법인, 중도매인 취급능력 크고, 총 취급물량은 감소추세이나 11개 전체 도매시장 중에서 오다시장의 취급비중은 증가 - 지방 도매시장의 물량 감소 원인은 장외거래의 증가와 일본 소비자의 소비량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 8차 도매시장재정비계획이 기존의 계획들과 다른 점

① 식품 안전·안심 강화

- 리스크관리제도인 SQM(Safety Quality Manager)제도 실시
- 검역 관리, 콜드체인 강화

② 소비자 대책

- 食育(소비자먹거리교육) : 어린이 방문객들에 동경도 직원, 법인 중에서 차출 하여 교육
- 요리교실 등 개설 : 미래소비자 확보 위해 어린이들 요리교실 운영
- 11개 도매시장에서 축제(마쓰리)

③ 시장간 격차 해소

- 전국 86개 시장 중에는 통폐합 등의 대상이 되는 시장이 있으나 동경도 도매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통폐합 계획은 없음.

○ 경매, 상대매매

① 경매비율이 10% 미만으로 감소, 그러나 여전히 경매가격이 시장 주도가격임.

- 11개 도매시장에서 경매비율이 6.7%
- 오다 도매시장은 경매비율이 11.45%, 상대매매 86.45%, 제3자판매 2.1%

② 상대매매는 예약거래가 아니고 대부분 선취거래임.

- 선취 등 상대매매는 보통 0시부터 이루어지며, 경매는 아침 7시경에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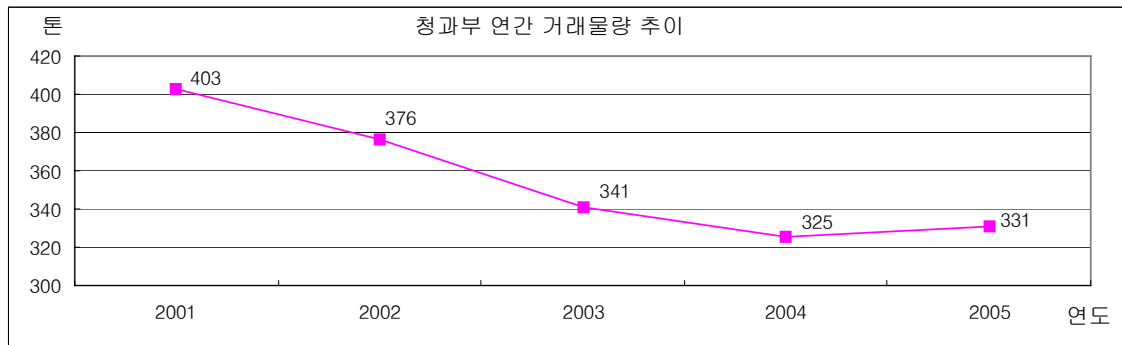
- 11개 도매시장 경영상태 : 2004년 7,000만엔 적자, 2005년 2억엔 적자
 - 적자금액은 조성되어 있는 2,000억엔의 기금으로 보전



3) 동경 쓰끼지(築地) 도매시장

- 개요
 - 총면적(230,836m²), 도매업자 매장(38,150m²), 중도매업자 매장(15,191m²)
 - 업무개시 연도 : 1935년 개장
 - 청과부 취급량 : 330,553톤(1일 취급량 1,211톤)
 - 공급권역 : 동경도내 및 관동 인근 현 지역
 - 특히 수산물시장은 세계최대 취급규모로 일본의 수산물 건치(建値)시장¹⁾ 역할 수행
- 조직 및 직원 수(2006년 현재)
 - 장장, 부장장, 관리과 59명, 설비과 35명, 수산농산물과 20명, 총 114명.
- 시장관계 조직 및 수
 - 도매업자(법인) : 농림수산성장관 허가 수산물부 7사, 청과부 3사
 - 중도매업자(법인) : 동경도지사 허가, 수산 815업자, 청과 112업자
 - 매참인 : 지사 승인, 대량소비자,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산 350명, 청과 861명
 - 관련사업자 : 지사 허가, 9업종, 20사업, 167업자
- 취급품목 : 수산물 480종, 청과물 360종
- 청과·수산물 취급량 감소 추세

1) 建値시장 : 주력시장의 가격을 다른 시장에서 참고하여 가격이 형성되는 가격주도시장을 말함.



- 시설 노후화, 과밀화 등의 문제로 2001년 ‘동경도도매시장 정비계획’을 발표하여 도심으로부터 약 3km 떨어져 있는 토요스지구로 이전 결정.



3) 중앙농업종합연구센터

(1) 일본 채소수급안정제도의 개요

- 1966년 ‘야채생산출하안정법’의 제정, 채소생산출하안정제도의 시행 근거 마련
- 채소가격이 현저히 하락할 경우 미리 조성한 기금으로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농가의 소득안정과 채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
- 사업 종류 : 지정채소 가격안정사업, 특정채소 공급산지육성 가격차보급사업, 중요채소 긴급수급조정사업, 계약지정채소 안정공급사업 등.

(2) 사업별 내용

가. 지정채소 가격안정사업

○ 등록 출하단체

- 농협, 농협연합회, 사업협동농협과 농협이 주된 구성원으로 되어있는 단체, 대규모 농가 등으로 '06년 현재 지정채소 등록출하단체는 농협 6, 농협 연합회, 사업협동농협 4개 등 21개 단체와 11개 생산농가가 등록함.

○ 대상 채소

- 생산량이 많은 양배추, 오이, 토마토, 당근, 피망, 양파, 시금치 등 14개 품목

○ 대상 채소 기준

- 지정 산지에서 생산하고 등록출하단체가 생산자의 위탁을 받아 출하하거나 등록생산자가 출하한 것, 농축산업진흥기구가 정한 대상시장군에 속한 도매시장에 출하한 것, 일정기간(주출하기) 내에 출하 한 것으로서 농축산업진흥기구가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등

○ 대상 시장

- 지정소비지역내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 이외 채소 판매시설로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 농축산업진흥기구가 정함. '06년 현재 중앙도매시장 76, 지방 도매시장은 120개소 등이 지정되어 있음.

○ 대상 출하기간

- 지정채소의 종류에 따라 주출하기가 정해져 있으나, 주출하기 내에서도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사업실시세척에서는 주출하기를 다시 세분하여 규정함.

○ 사업시행 절차

- 사업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함. 보증기준액을 평균가격의 90%로 책정하고 지정채소 가격이 보증기준액 이상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함. 평균가격은 과거 9년간 도매시장의 도매가격과 도매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함.

○ 최저기준액

- 평균가격의 55%로 책정하되, 판매가격이 그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는 최저기준액과 판매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실은 보전대상에서 제외함.

○ 가격차 보조금의 교부

- 보조금 교부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공동출하분에 대하여 순별로 평균판매가격을 산정(토란, 감자, 양파는 월평균가격으로 함).

나. 특정채소 공급산지육성 가격차 보전사업

○ 사업 개요

- 지정채소 이외의 채소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야채공급안정기금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가격차 해당액을 보조 지원함.

○ 사업기준 및 요건

- 대상채소는 지정채소 외의 채소 중 국민소비생활 및 지역농업진흥상 중요한 품목으로서 딸기, 호박, 고구마, 생강, 우엉, 마늘, 수박 등 31개 품목이고 대상산지는 해당 대상채소의 작부면적이 대략 5ha 이상인 산지로 함.

○ 사업시행 절차

- 보조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기준에 의해 선정하고 출하단체는 농협과 산림조합 및 그 연합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함.

○ 대상 출하기간

- 지정채소 가격안정사업과 동일한 방법임.

○ 보증기준액 및 최저기준액

- 보증기준액 산정은 평균가격최 80%에서 결정하며 보증기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가격은 과거 8년간의 시장 실체가격과 도매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계산하고 최저기준액은 지정채소사업과 같이 평균가격의 55%로 하고 있으며 출하단체의 선택에 의해 특례계약도 가능함.

○ 교부금 단가

- 보증기준액과 평균판매가격 차의 8/10이며 가격보전을 위한 자금은 정부, 지자체, 출하단체가 1/3씩 출연하여 조성함.

다. 중요채소 긴급수급조정사업

○ 대상품목

- 작황 및 가격변동이 크고 유통량이 많은 양배추, 양파, 무, 배추 등 4개 품목

○ 사업주관

- (사)전국야채수급조정기구에서 주관하며 긴급수급조정대책은 생산자의 요구에 의해 실시함.

○ 자금조성

- 국가와 생산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전국야채수급조정기구에 자금을 조성함.

○ 사업방식 I (가격 하락시)

- ① 출하지연 ⇒ 시장가격이 과거 평균시장가격의 80% 이하로 하락시 발동하며 출하지연을 통해 시장 반입량 감소를 유도하고 평균가격의 30%를 보전함.
- ② 가공용 판매로 돌림 ⇒ 시장가격이 과거 평균시장가격의 70% 이하로 하락시 발동하며 시장 출하분의 일부를 가공용 원료로 판매함.
- ③ 산지폐기 ⇒ 시장가격이 과거 평균시장가격의 70% 이하로 하락시 발동하고 공급과잉 물량에 대해 포장폐기 혹은 비료화를 실시하여 평균가격의 40%를 보전함.

○ 사업방식 II (가격 상승시)

- ① 공급확대를 요청 ⇒ 생산자단체, 식품유통관련 단체 등에 출하확대 및 안정적 공급을 요청함.
- ② 조기출하 실시 ⇒ 시장가격이 과거 평균시장가격의 150% 이상 상승시 발동하고 예상 수확시기보다 수확을 앞당겨 조기 출하를 유도하여 평균가격의 30%를 보전함.
- ③ 등급 외 물량 출하를 유도 ⇒ 굵은 오이, 소구 양배추 등 평상시 상품화가 어려운 채소의 출하를 유도함.

〈 2006년 긴급수급조정대책 실시 현황 〉

단위 : 천톤

품 목	기 간	계획물량
무(가을, 겨울)	11월 하순 ~ 12월 상순	3.4
배추(가을, 겨울)	11월 하순	8.8
양상추(겨울)	12월 상순	9.7
합 계		22.0

라. 계약지정채소 안정공급사업

○ 사업개요

- 일반가정용 이외에 가공업자, 외식업자, 대형소매점 등 업무용 수요는 연중 일

정한 품질, 가격, 물량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납품조건에 부합하는 채소를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대상채소 및 대상산지

- 지정채소가격안정사업과 동일함.

○ 대상 계약거래

- 사업 신청 이전에 출하자와 거래처 사이의 직접계약을 원칙으로하여 서면형태의 계약을 체결함.

○ 사업 방식

- ① 수량 확보형으로 보전대상은 작황변동에 의한 수확량 부족으로 계약물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구입하는 등 계약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함.
- ② 가격하락형으로 보전대상은 시장가격과 연동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하는 계약거래에서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했을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함. 보전내용은 평균거래가격이 보증기준액(기준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보증기준액과 평균판매가격과 차액의 90%를 보전함.
- ③ 출하조정형으로 보전대상은 생산자가 충분한 계약물량 확보를 위해 계약물량 이상으로 잉여생산을 했을 경우이며 또한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잉여생산분에 대해 출하조정을 실시하는 때에 보조금을 지불함.

○ 자금 조성

- 지정채소는 정부 50%, 지자체 25%, 생산자 25%의 비율로 자금을 조성하며, 축정채소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 생산자가 각각 1/3씩의 비율로 조성함.

(3) 긴급수급조정제도의 사업방식(산지폐기)과 관련한 최근 논의 동향

- 긴급수급조정대책 가운데 산지폐기에 대해서 ‘아깝다’라는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남.
-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학계, 언론계,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야채 긴급수급조정방법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통하여 수급조정의 필요성, 현행 수급조정방식의문제점, 향후의 수급조정방법 등의 개선책을 검토함.
⇒ 검토 결과, 산지폐기 이외의 방법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하여 당분간 산지폐기 제도를 유지키로 잠정 결론을 냈으며 다만, 용어를 ‘산지폐기’ 대신 ‘시장격리’라고 사용하기로 함.
-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지폐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공모함.